

消費者와 食品産業 -PL법을 중심으로-

허승 /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최근 食品産業의 企業 環境은 인터넷 및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른 情報化的 급진전으로 食品의 製造·加工, 流通 및 消費者의 環境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GMO표시제도 및 PL법 도입 등 급변하는 消費者 環境에 대응하는 새로운 經營戰略을 수립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에 따라 韓國食品工業協會에서는 2001년 7월6일~7월7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새로운 消費者 環境變化와 食品産業의 發展方案』을 기본주제로 2001년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글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소비자와 식품산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注〉

I. 소비자 안전 (Consumer Safety)

물품이나 서비스(용역)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신체적 부상이나 생명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1. 소비자 안전문제의 발생원인

- 제조상의 결함 및 구조적인 결함
- 대량생산 및 판매
- 생산공정의 다단계 분업화
- 표본검사에 의한 품질관리

- 수입물량의 증가
- 경고·표시가 불충분하거나 내용 전달의 미흡
- 신기술·첨단제품으로 인한 안전문제
- 소비자의 사용부주의(사용목적, 사용환경) 등

2.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국내·외 동향

- 품질·규격 등에 대한 인·허가 등의 규제 완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 소비자의 생명, 신체와 관련되는 각종제도의 도입 등 소비자안전

- 규제 강화.
-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리콜제도 강화(소비자보호법 개정: (2001년 7월 1일 시행).
- <리콜제도 강화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 ① 제품결함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의무제도(법 제 17조)
 -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
 - ② 결함 추정제품에 대한 정부의 리콜 권고 제도 (법 제17조의3)
 - ③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제품의 긴급 리콜명령제도의 도입(제17조의 4 단서조항)

II.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의 주요 내용

1. 의의

제조 판매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되어 사용자가 신체와 생명에 대한 상해나 재산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품의 제조, 판매자 등이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

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

- 산업구조의 변화(대량생산, 대량소비)와 소비자피해의 광역·심각화
-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책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균형의 촉진
 - ※ 1963년 : 미국
1995년 7월1일 : 일본
2000년 1월12일 : 한국(2002. 7. 1 시행예정)
 - ※ EU, 중국, 필리핀, 브라질, 호주 등 현재 30여개 국가 도입

3.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 제조물

- 제조 또는 가공된 動產(법 제2조 1호)
 -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 : 고체·액체·기체)
- 모든 가공 식품(미가공된 농·수·축·임산물 제외)
- 상수도, 도시가스, 스팀
- 전기, 열 등 무형에너지
- 중고품, 재생품, 예술작품
- 건물, 토지에 부착된 공조설비, 조명설비, 배관시설, 승강기 등은 동산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 ※ 「제조」는 제품의 설계, 제작, 검사, 표시 포함.
- ※ 「가공」은 본질유지, 새로운 속성 또는 가치를 부가하는 것 (가열, 조미, 절임, 분말화, 짜기 등).
- ※ 미가공 농·수·축·임산물은 제조·가공이 아니라 생산의 대상이므로 제외.
- ※ 소프트웨어·정보 등은 지적재산물로 동산이 아니므로,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음.

4. 제조물 결함의 유형

- 제조상의 결함
 - 성능 및 품질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제조됨으로써 생기는 사고.
- 설계상의 결함
 - 설계단계에서 안전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생긴 사고.
- 경고 또는 지시상의 결함
 - 주의 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가 불충분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생긴 사고.
- 명시된 보증과 일치하지 않는 결함
 - 광고, 카탈로그, 매뉴얼 등에 쓰여져 있는 성능이나 사양과 실물 간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경우.

5.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법 제2조 3호)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공급업자)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
- 부품 및 원재료 제조업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 또는 오인시킬 수 있게 표시한 자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조물책임을 짐.

※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연대

책임을 짐.

6.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경우(법 제4조)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 원재료·부품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에 의한 제조물 결함 발생의 경우
- ※ 서비스업자, 운반업자 등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자는 책임부담이 없음.

■ 면책사유가 부인되는 경우

-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후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면제 받지 못함(제조업자의 리콜 의무).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7. 제조업자의 책임기간(법 제5조)

■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

으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소멸함.
 - 다만, 담배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8. 시행시기 및 적용례

-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또한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
- 2002년 7월1일 이전에 공급된 제품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도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음.

9.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측면

가. 제조물(제품)의 안전성 강화

- 안전한 제품의 생산이 기업경영의 성패와 관련

-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 노력(제조물의 개발·제조·표시·검사·판매).

나.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 및 소비자보호

-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장책임 부담이 줄어듬.
 -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분쟁의 신속한 해결
 - 「제조물의 결함」 판단기준은 사회적 상식, 사회통념에 의해서도 판단이 될 수 있음.
- 국내 소비자와 외국 소비자 보호의 형평상의 문제 해소
 - 수출품은 타 국가에서 제조물책임제도를 적용 받는데 반해, 국내 소비자는 제조물책임제도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기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제품의 생산·판매를 하게되어 제조물의 안전성 위주의 경쟁을 촉진.

■ 부정적인 측면

가. 제조원가의 부담 가중

-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엄격해지게됨에 따라 원·부자재의 추가 안전성 검사, 기존설계의 보완 등의 비용이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

나. 인력과 비용의 과다 소요

- PL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

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력과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됨.

다. 기업이미지의 손상 가능성 증대

-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한 피해배상의 문제이므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 될 수 있음.

III. 제조물책임법 관련 식품업계의 대응

1. 제조물책임 대책의 필요성

-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관심 및 손해배상 청구 의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인지
- 부품, 원재료제조업자도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됨
- 품질 관리(QC)나 품질 보증(QA)의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가 사용할 때의 안전성 강화 요구
- 제조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물음

2.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D : Product Liability Defense)

가. 안전성의 향상과 품질관리의 철저

- 종업원의 위생관념 철저 및 준수
- 제조공정과정에서 이물질의 혼입 방지
- 품질검사 강화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통한 안전성 향상 도모.

- ISO 9000(국제적 품질관리와 품질보증규격)시리즈 규격에 의한 품질 보증.

나. 원재료 구입선의 체크

- 구입하는 원재료의 신선도, 이물 혼입, 위생법규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

다. 포장·용기의 안전성 확보

- 포장재, 용기의 유해물 및 강도, 밀폐도 등의 안전성 확보.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이나 제품의 설명서 체크

- 유통기한 표시
- 제품의 취급설명서 충실회
- 특히 오·남용예방을 위한 경고 표시는 잘 보이도록 분명하게 표시.

마. 제조물책임방어를 위한 문서관리, 기록보존

- 개발, 설계, 실험, 제조, 검사, 판매서비스기록 및 제품안전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

바. 클레임대응체제의 정비

- 소비자의 불만제기(claim)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결함상품의 신속한 경고 및 자발적 회수
- 분쟁처리기관의 활용
- 원인규명기관과의 연대

-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
 - 제품의 결함 개선
 - 제품 사용설명서 개선 등의 신속한 조치
- 사. 사고의 재발 방지 노력**
- 사고정보 수집체제의 강화
 - 사고내용을 분석

IV. 소비자 안전관련 제도 비교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 및 피해보상제도의 차이▶

구 분	리 콜	제조물책임	피해보상
근거 법규	품목별 관련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민법(하자담보책임) 소비자보호법
목 적	사전 위해제품 회수 (위해예방, 직접적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사후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손해보상 (개별 소비자 요구에 의한 사후처리)
대 상	안전성관련 결함으로 위해발생 및 발생 우려 제품 (위해발생 및 발생 우려 제품 전체)	안전성관련 결함 제품(개별제품에 해당)	제품결함, 품질하자 (안전, 품질, 계약 등)
실시 방법	모든 소비자 대상 공개수거 및 보상 (수리, 교환, 환불)	손해입은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확대 배상(손해 및 제품 배상)	손해입은 소비자에게 개별 보상 · 배상 (수리, 교환, 환불, 배상, 계약해제 등)

V. 맷는 말

■ 위해·위험 제품으로부터 제품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행정상의 안전규제를 두고 있음.

■ 그러나 규제완화, 자기책임이 중시·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율적인 기준만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제조업자 스스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피해구제가 용이하게 되고, 제조업자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므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될 것임.
-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결합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엄격하게 인정되면, 제조업자는 동일·유사한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리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제조물책임법은 리콜제도를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안전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의 제·개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항상 소비자를 의식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해야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임.